

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(제10조의3제1항제2호 관련)

구분	세부기준
1. 시설	가.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강의실 하나 이상 나. 실습을 위한 장비가 갖춰진 실습장 하나 이상
2. 인력	가.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 교수요원 나.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·관리하는 전담 관리자 1명 이상

비고

1. 제2호에 따른 전문 교수요원 및 전담 관리자는 각각 별도로 두어야 한다.
2. 기관, 시설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전문 교수요원이나 전담 관리자의 업무 중 하나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해당 인력 산정에 포함한다.